

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3. 12. 6.(금)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3. 11. 1

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

다. 회부일자 : 2013. 11. 4

라. 상정일자 : 2013. 12. 6(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)

- 제안설명 : 박준하 기획관리실장
- 검토보고 : 왕동항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- 질의 및 토론
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도시재생관련 법률 제·개정에 따라 관련법률 및 사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3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인천도시공사의 도시재생 관련사업 범위를 관련법률 제·개정에 따라 확대 규정함.(안 제21조 제1항 제3호)

▶ 도시재생 관련사업의 근거법률 확대

기 존	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('03.7.1. 제정)
확 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('12.2.1. 개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거환경관리사업, 가로주택정비사업 추가 ·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('05.12.30. 제정) ·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('13.6.4. 제정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동 개정 조례안은, 인천도시공사가 수행하는 건설·개발관련 사업 범위 중 도시재생 분야를 확대하고자 관련 법률 제·개정을 근거로 사업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

조항	현 행	개 정 안
제21조 (사업)	주택재개발사업·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	주택재개발·도시환경정비 및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재생관련 사업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이상철 위원 >

- 주거환경재생사업, 도시환경개선사업 정의
 - ⇒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집단거주 지역을 말함.
 -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, 공업지역 내에서 도시기능 회복차원
- 재생사업, 도시환경정비사업 차이?
 - ⇒ 개정내역에는 재개발 재건축은 전면 철거방식이었으나,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이 전환되는 시점임. 원도심 활성화 차원임.
 - ⇒ 주거환경사업보다 한단계 넓어진 의미임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4명(이용범, 최용덕, 류수용, 이상철 위원)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석위원 4명 : 찬성 4명)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
8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주택재개발·도시환경정비 및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재생관련 사업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1조(사업) ①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~ 2. (생략)</p> <p>3. 주택재개발사업·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</p> <p>4. ~ 19. (생략)</p>	<p>제21조(사업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주택재개발·도시환경정비 및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재생관련 사업</u></p> <p>4.~ 19. (현행과 같음)</p>